

# 대상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백혜련·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아청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총370개 단체)



# Program

시 간	내 용	세부 내용
※ 사 회 :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10:00~10:15 (15')	개 회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10:15~10:25 (10')	영상 상영	아청법 개정 7년의 싸움, 무엇 때문일까?
※ 좌 장 :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10:25~11:25 (60')	토 론	조진경_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양종윤_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이경화_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차인순_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윤채완_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11:25~11:55 (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손정아_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애_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부대표 남은주_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표 김예원_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11:55~12:00 (5')	폐 회	마무리



# Contents

---

○ 개 회 사	1
남인순 국회의원	1
김삼화 국회의원	4
백혜련 국회의원	6
표창원 국회의원	8
아청법 개정 공대위	10
○ 토 론	13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5
양종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23
이경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25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27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33
○ 부 록	43
아청법 개정 공대위 활동자료	45



# 개회사

---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송파병)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책에 대한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백혜련, 표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시며 아청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370개 단체로 이루어진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2016. 8. 8.)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18. 2. 21.)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주요한 원인이 가정해체 등에서 비롯된 빈곤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반복적·직업적 성매매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문·특화된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 6. 15. 결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

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2018년 1월 ‘아청법’ 개정에 대해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이 개정안은 통과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하여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상 아동·청소년이 재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보호처분 폐지의 상당성 및 그 대안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는 10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평균 나이는 14.87세<sup>1)</sup>며, 아이들 10명 중 7명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sup>2)</sup>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다층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어른들이 거액의 돈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집요하게 성매매의 덫을 놓고 있지만, 현행법은 덫에 걸린 아이들을 보호해주시는 커녕,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해 실제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로 인식되고 있을 뿐더러, 과정상의 문제들 때문에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성매수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많은 사건들과 현장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2015년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는 성매수 가해 남성이 만 14세의 청소년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2014년 7세의 지능을 가진 13세 ‘하은이(가명)’가 가출 1주일 만에 성인 6명의 남성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이동되며 성폭행 당했음에도 성폭행이나 성매매 피해아동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

---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 여성가족부(2016), 성매매 실태조사

들로 언론에서도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1,101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수범 최종심 선고형을 살펴보면 집행유예 64.7%, 벌금 24.9%이고, 징역형 10.4%<sup>3)</sup>에 불과합니다. 익명 플랫폼에 숨은 가해자들은 특정하기조차 어려워 이 통계 또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정작 아이들의 성을 산 어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걸까요? 돈과 권력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법적 책임과 잣대를 돌려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원 체계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성매매 피해경험이 복합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탈성매매와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어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는 각종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아청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4.

국회의원 남인순

---

3) 여성가족부(2016)

# 개회사

---



국회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먼저, 남인순·백혜련·표창원 의원님,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정성껏 준비한 발제와 토론으로 세미나의 깊이를 더해 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폭행, 강간하는 등의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와 남인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듬해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수차례의 토론회를 비롯하여 공대위와 함께 ‘아청법’ 개정안의 안건상정과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부의견이 현실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대안제시까지 이루어져 ‘아청법’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생존 위협에 빠진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와 성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척결에 있어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기탄없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4.

국회의원 김삼화

# 개회사

---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남인순·표창원 의원님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아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개정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미 아청법 개정 시도는 2013년부터 추진되어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처벌인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게 하며 성매수자와 알선자들이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은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처벌을 내리는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아청법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지금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청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는 아청법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아청법 개정안은 보호처분의 대안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담고 있는 만큼 각 부처의 의견이 잘 조율되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아청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과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청법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4.  
국회의원 **백혜련**

# 개회사

---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정)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책 간담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토론자 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언론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때는 1997년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우리 사회는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단속해왔고 성 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SNS, 인터넷 방송과 같은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 대책과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지원

은 더욱더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9. 6. 4.

국회의원 표창원

# 개 회 사

---

‘아청법’ 개정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손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 SNS,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그루밍 수법에 의해 성인들에게 길들여지며 성매매 되고 있거나,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한 후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로 유인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수법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고, 그 피해의 양상도 협박, 감금, 강요, 폭력, 에이즈에 이르는 감염,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살해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아청법’으로는 더 이상 아동·청소년들을 성매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할 뿐이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아청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을 지난 수년간 현장단체들은 꾸준히 제기하여왔습니다.

2016. 8. 8., 2017. 2. 13. 남인순의원, 김삼화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으로 이들 개정안의 내용대로 ‘아청법’이 개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2018. 2. 2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 2. 28.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저연령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더 이상 기다리거나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총 370개 단체)가 모여 2019. 1. 22.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 발족 이후 여러 활동을 통해 사실상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이 자명하게 드러났고, 이에 수차례 법무부에 공대위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및 담당자와의 면담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9년 2월 18일, 19일자로 법무부 각 여성아동인권과, 형사법제과, 소년범죄예방팀에서 현재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과별로 각기 다른 의견을 민원 회신 결과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2019년 3월 26일과 4월 3일 열린 두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에서 역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안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4. 4.일자 법무부 형사법제과(1341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민원 회신(공동대책위)’이라는 제목으로 공대위 사무국에 공문을 보내왔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아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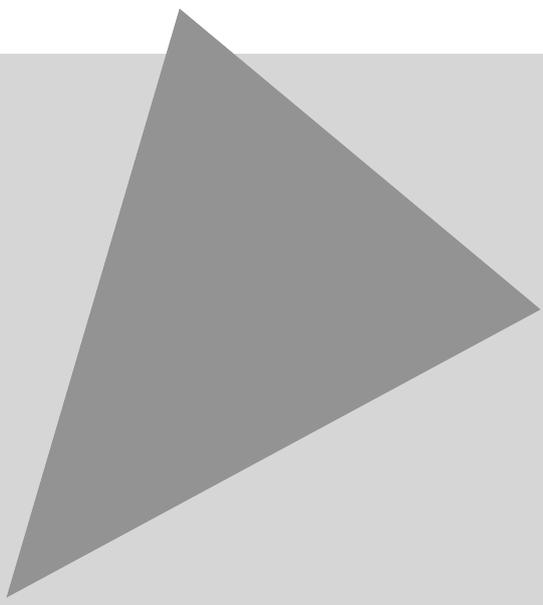
‘아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아청법’ 상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함에 있어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방안이 상당한지, 대안이나 보완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과 함께 책임있는 정부의 담당자들을 모시고 현행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하려 이번 간담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간담회를 개최해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김삼화 의원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시면서 함께 해주신 백혜련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점점 더 저연령화되고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 6. 4.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 토 론

조진경\_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양종운\_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이경화\_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차인순\_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윤채완\_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법무부에게 듣고 싶다

조진경 (아청법' 개정 공대위 공동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청소년이 재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보호처분 폐지의 상당성 및 그 대안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1)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문제를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동등하게 바라 보던 기존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봄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되었을 때 공권력에 신고요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를 통해 성범죄자(매수자)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를 조기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였지만, 우선 대상아동·청소년이 재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주장과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호처분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을 볼 때 성매매를 일으키는 주체를 아직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청법의 본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윤락여성’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기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1헌가1 결정) 결국 현행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은 ‘아청법’의 본래 입법취지에도 전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2018년 1월에는 ‘아청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http://segye.com/newsView/20180126001438>)

현행 아청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아청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 구제하겠다는 것인데, 법무부의 입장은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못하고, 범죄자로 보면서 ‘대상아동청소년’이 재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보호처분을 운운하고 있다.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폐지를 통해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본다는 의미는 ‘성폭력’ 피해와 같이 가해-피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인에 의해 성폭력을 제2, 제3번씩 당하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보호처분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상호 모순적인 이상한 논리일 뿐이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 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피해자로서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 ③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법무부의 기존 시각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해서, 자발-강제 도식을 통해 피해와 자발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을 통해 보호를 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 IT 산업의 발전과 결합된 상업화된 성착취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으로 성매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사실상 알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본인도 처벌(보호처분)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매수자 및 알선자를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너도 처벌받는다”는 협박을 통해 성매수나 알선자의 지배가 더욱 심각해짐은 그간 수년간 드러났던 수많은 피해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만 13세이며 7세 수준의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인 ‘하은이’가 가출 1주일만에 성인 남성 6명에게 전국적으로 이동되며 성폭행당하였던 일명 ‘하은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은이 모에 의해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되었으나, ‘하은이’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되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현행 아청법에 의해 ‘하은이’를 성폭행 피해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하은이’가 스스로 내려 깔고 성인과 채팅하여 자발적으로 이동하였고, 차비나 치킨, 떡볶이 등을 얻어 먹었다 하여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하였고, ‘하은이’는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피해아동청소년이 받아야 할 어떠한 보호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수사가 성매매로 방향을 바꾸자 그나마 해바라기센터의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현행 아청법으로는 만 13세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도 성매매 되었을 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분류되어 모든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하은이’는 그렇다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되었는가? 하은이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면,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호, 부모에 의한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5호 단기,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병원, 요양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10호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 ‘하은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아동청소년이므로 해바라기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모든 보호지원대상에서 배제됐을 뿐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구제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묻는다면 ‘하은이’가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아청법 상 ‘하은이’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대상아동청소년으로써 다른 범죄 가해자들과 동일하게 보호처분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을 지도 모른다. 이 경우 검찰은 직무 유기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명백한 피해를 입은 ‘하은이’를 아청법대로 다른 범죄에 가담한 아동청소년들과 동일하게 보호처분 하였다면 이 또한 부모나 사회의 반발이 심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아청법에 의한 국가 보호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이렇게 상호 모순적이고 부실하며, 실효성이 없는 현행 아청법과 법무부가 주장하는 보호체계를 더 이상 지속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2.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성매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보완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1) 개정안에는 발굴, 의료, 법률, 심리, 자활, 교육에 이르는 피해자 보호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해 설치될 통합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아 보호지원 할 수 있지만, 법무부의 우려는 재범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다른 보완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무가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보아 피해지원보다는 처벌과 재범방지의 방식으로만 아동청소년을 규율하겠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만 방증할 뿐이다.

4) 별첨자료 1 참조. 2019. 4. 18. 남인순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요청하여 2019. 4. 25. 회신받음.

2) 현행 아동법 상,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일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대상아동청소년(법무부에서는 이들 대상아동청소년이 재범우려가 높은 아이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 현행 아동법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따라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모든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일 경우만 보호처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장의 경험에서 볼 때, 사실상 현 보호지원 시스템 상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아동청소년도 기존 국가지원 시스템에서 보호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 전국의 해바라기센터에서 보호지원받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를 실시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사의 내용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써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있는지, 그 수는 1년에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그것이다. ‘하은이’의 경우처럼, 성폭력으로 신고되었지만, 성매매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더 이상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분되어 성매매되었지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된 인원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3) 또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으로써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된다면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명단통보되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10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국가 지원체계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복합 범죄에 연류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심각하다고 여겨 분류심사원에 연계된 범죄 아동청소년들은 장기 6주까지 관찰되어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되고 있는 것이 현행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이다. 이는 규제와 갱생의 측면이 강조된 명백히 범죄 행위자로 보는 범죄 재범방지 규제 체계일 뿐인데, 법무부는 이러한 현행 규제 체계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라 여전히 우기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4) 또래 포주에 의해 성매매 강요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둘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보호처분 되는데, 전국에 분류심사원이 사실상 1곳밖에 없어 같은 곳에 입소된다. 이러한 경우 또래 포주에게 알선되어 알선자인 또래 포주(가해자)와 그에 의해 알선되어진 아동청소년(피해자)이 보호처분을 똑같이 받는 것이 타당한가?

**3. 법무부는 “기존 보호처분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원센터’에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전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현행 보호처분과 차별화된 재범 방지 교육이 무엇인지, 지원센터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법무부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수 년동안 관련단체와 국회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 물었지만 답변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만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어왔다. 또한 본 발제문 첨부 자료에도 제시되었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 부과된 사건은 2017년도 6건을 제외하고 0건이다. 법무부 역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전력 관리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만약 법무부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전력 관리를 해왔는데도 그런 결과였다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 부과는 전혀 이용률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보호처분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이 없는데 왜 현행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가? 법무부는 현행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또한 그 시스템이 현실에서 전혀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인 성범죄자들에 의해 협박과 같은 부정적으로 이용되어 정작 아동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370여개나 되는 범시민여성청소년단체에서 공대위까지 꾸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얼마나 더 어렵고, 얼마나 더 일반화되고, 얼마나 더 끔찍해져야 귀를 기울이려 하려는지 법무부의 높은 벽이 답답할 뿐이다.

2) 또한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고, 보호처분규정이 삭제된다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성범죄자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전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묻는다는 것은 법무부가 역시나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3) 그동안 민간단체에서는 보호처분의 강제 교육의 비효율성, 반인권성을 고려하여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자기 주도적, 인권보호와 심리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십수년간 운영해왔으며 피해 재발방지에 대한 상당한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 법무부의 보호처분에 대한 비인권성과 재범방지의 비실효성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

**4. 법무부는 담배나 술을 산 청소년이 단속에 걸렸을 때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주만 처벌받는 것을 아는가? 그런데 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불법 성매매에 대해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변을 듣고 싶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에 따라 술, 담배를 구매한 18살 아동청소년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때는 아동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성인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의 대상이 된 14세의 여성아동청소년에게는 성인과 똑같이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18살이 미성년에 가까운가, 14살이 미성년에 가까운가? 담배나 술보다 더 유해하고 폭력과 학대에 가까운 성매매를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똑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가?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1)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매매 유인 환경은 IT 기술의 진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인터넷 개인 TV 방송 등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매개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고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는다.

2) 성인 성매수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재범방지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으로 보호처분 받은 건수
  - 2014~2018년 단독범과 복합범(범죄명 적시) 구분
  - 보호처분 받은 경우, 동종범죄 재범률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으로 보호처분이 부과된 사건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청소년으로 보호처분이 부과된 사건 수

(단위 : 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건 수	0	0	0	6	0

- 2017년 6건의 사건은 특정 지역에서 친구 및 선후배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어울리며 가출 등을 일삼고 수차례 성매매를 시도한 전력으로 우범\*송치된 사건이며, 그 중 1건은 공동폭행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 성격,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또한, 상기 6건의 사건 중 동종범죄로 인한 재범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주무관 곽수길(02-2110-3915), 소년보호과 주무관 이신주(02-2110-3352)입니다.











# 토 론 문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1. 입법과정

안건	18.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01478]	19.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01727]	20.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2005598]
심사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8. 8. 발의</li> <li>○ 2016. 11. 17.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li> <li>○ 2017. 2. 22. 소위심사</li> <li>○ 2017. 12. 15. 소위심사</li> <li>○ 2018. 2. 20 소위심사</li> <li>○ 2018. 2. 21 소위심사</li> <li>○ 2018. 2. 21 전체회의 의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8. 22. 발의</li> <li>○ 2016. 11. 17.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li> <li>○ 2017. 2. 22. 소위심사</li> <li>○ 2017. 12. 15. 소위심사</li> <li>○ 2018. 2. 20 소위심사</li> <li>○ 2018. 2. 21 소위심사</li> <li>○ 2018. 2. 21 전체회의 의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2. 13. 발의</li> <li>○ 2017. 2. 22. 바로소위/소위심사</li> <li>○ 2017. 12. 15. 소위심사</li> <li>○ 2018. 2. 20 소위심사</li> <li>○ 2018. 2. 21 소위심사</li> <li>○ 2018. 2. 21 전체회의 의결</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sup>5)</sup>을 ‘피해아동·청소년’<sup>6)</sup>으로 변경(안 제2조 제6호 및 제7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유지</li> <li>단, <b>정신적 장애</b>로 사물 변별 능력 미약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인순의원안과 동일</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안 제49조 및 제50조)</li> </ul>
<b>남인순·김삼화의원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년법 적용 등 선도보호<sup>*</sup> 규정 삭제(안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법원소년부 등에의 통지·통고,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li> <li>※ (현행)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발견 → 수사 → 송치 → 검찰의 교육과정(상담이수) 명령 또는 소년부 송치 → 법원의 보호처분</li> </ul> </li> <li>○ <b>선도·보호체계 → 발견·지원체계로 전환(제38조제2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성매매 청소년 연계, 여가부에 연계사실 통보</li> <li>※ 연계주체 : 남인순의원안(사법경찰관), 김삼화의원안(+검사) / 연계사실 통보 : 김삼화의원안(여가부장관), 남인순의원안(+시·도지사)</li> </ul> </li> </ul>			

	<p>○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업무* 폐지(안 제46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안 제47조의2 신설)에서 수행</li> <li>※ 성범죄 신고접수·상담, 대상 아동청소년과 관련 시설과의 연계·위탁, 기타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li> </ul> <p>○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업무 확대(안 제46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 전담 수행 및 교육·상담 업무 추가*</li> <li>※ 가해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의 교육</li> </ul> <p>○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7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남인순의원안(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김삼화의원안(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li> <li>- 운영주체: 김삼화의원안(여가부장관), 남인순의원안(+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li> </ul>
<p>대 체 토 론 요 지</p>	<p>○ 여성가족부가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분류하는데 앞장서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김삼화위원)</p>
<p>검 토 보 고 요 지</p>	<p>○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와 성폭력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함.</li> </ul> <p>○ 소년법 적용 등 선도보호 관련 규정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보호처분 제도의 재발방지 효과와 상담교육과정 이수 효과성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li> </ul> <p>○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보호 및 상담시설은 각각 위기청소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 성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운영 및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li> <li>- 다만, 폭넓은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여금 현행과 같이 신고 접수 및 상담업무와 병행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업무를 수행할 필요</li> </ul>
<p>대 안</p>	<p>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p> <p>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p>

요 지	<p>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p> <p>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3항제1호).</p> <p>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p> <p>마.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p> <p>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p> <p>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p>
--------	---

## 2. 국회 내 입법 연구 및 토론

- 2017. 7. 26.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최 : 남인순의원, 김삼화의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2017. 10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조진경,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 2017. 11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 윤덕경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12.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실태 및 개선과제,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 2018. 8. 28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보호 법제화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주최 :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입법조사처 등

##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제규약 및 관련 단체의 연구와 토론 다수

-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주문 :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고 보호처분 규정 삭제

- 
- 5) 현행법은 제2조제7호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40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다고 보아 성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음.
  - 6) 현행법은 제2조제6호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음.

제, 보호와 지원 강화

○ 2018. 3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문>

우려 : 성매매 착취 피해아동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으로 교정교육 대상이 되는 것

권고 : 피해자 중심, 인권 중심 접근법 채택하여 성매매 착취에 대처할 것

4. 입법 필요성

○ 여성가족위원회 심사과정 : 다각도의 연구,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친 신중한 검토의 결과

○ 여성가족위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법무부 입장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범죄의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공감”

“보호처분 규정 삭제하더라도 이들이 적극적, 반복적으로 성매매에 나가는 경우 등 구체적인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리 의견

사회적 요구 => 입법 => 효과성 확인 --> 작용  
--> 법과 현실의 괴리 또는 사문화  
--> 부작용

1) 입법 부작용

==> 동 규정은 **부작용**이 커서 제기된 사안임.

(성매수에 연루된 청소년에 사실상 처벌 효과 및 탈성매매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성착취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현장 연구 보고들)

==>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 보다 탈성매매 하지 못해 성착취 상태에 계속 놓이는 청소년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

2)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통계적 검토 결과)

3) 체계 상 문제 : 아청법의 **입법 목적/취지와 어긋남.**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우려의 해소 방향

==> 현행 지원체계는 청소년들의 손을 잡아 주기에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 예산지원 보강될 필요)

(현행 규정은 1999년 법안 및 2000년 입법모델; 지난 20년 동안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의 발달 고려해야.)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율, 교육 이수율 높음; 여가위 결산 검토)

==> 대안 제38조 제2항과 제3항의 적극적 집행 : 검사, 경찰관의 여가부/지자체에 대한 형식적 통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즉각적 연결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운영 차원에서 보완할 것.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유인, 수요자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 기소 등 **엄정한 법집행**이 근본적 대안.

(대안 제38조)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 토 론 문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 6. 15. 결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쉼터) 14개소를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비입소시설인 자립학교, 드롭인센터 등 이용자 중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10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종사자 251을 설문조사 했다. 또한 15명의 아동 및 2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3. 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고, 만 13세~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4.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46.6%가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31.1%였으며,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8.4%였다. 법원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그렇다 10%, 조금 그렇다 30% 등 그렇다는 응답이 40%였으며, 보통이다 30%, 조금 아니다 10%, 전혀 아니다 20%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서의 범죄자 취급도 약 34%로 나타났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치료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사실상 구금의 형태가 가능하고, 보호처분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였음에도 아동·청소년에게는 사실상 처벌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다.

5.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당한 응답율이 약 80%정도, 알선자로부터의 부당한 경험은 약 54%였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신고를 꺼리게 되며, 이런 열악한 처지를 알선자와 성매수자가 악용하여 성매매 사실을 가족, 친구 등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아동·청소년은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자'라는 의심과 사회적 낙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채 성매매피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제3자에 의한 알선이나 유인, 권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아 피해자가 아니라고도 한다.
6.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성구매 및 판매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스위스는 성판매 아동을 처벌하지 않으나 성을 구매한 청소년은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성매매에 이용된 여성과 아동은 모두 폭력과 억압의 피해자로 간주한다. 뉴질랜드는 청소년 성매매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의도를 강조하여 "18세 미만의 경우 법에 의해 처벌 받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18세 미만에 대해서 성매매에 '이용'되었다고 표현해 청소년 성매매가 착취와 이용이라는 점과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7.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인은 신체적 능력,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8.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쉽게 접근한 성매매로 인해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이 저해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오랫동안 남긴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신체적·정신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상황에서 우위에 있는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는 성인을 엄히 처벌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관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한다.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2017. 6. 15.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상 임 위 원 회

### 결 정

제 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김삼화의원, 남인순의원이 각 2017. 2. 13., 2016. 8. 8.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유

## I. 의견표명의 배경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을 저해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남인순의원, 김삼화의원이 각 2016. 8. 8., 2017. 2. 13.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478, 의안번호 2005598)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두 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대상아동”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이 아동·청소년 및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통합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 10.)』를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 III. 판단

## 1.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및 보호처분 규정 삭제 필요 여부

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국제인권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6. 9. 전부개정된 것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1헌가1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34조는 당사국의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3.은 성적학대와 착취를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아동의 성적 착취 근절을 위하여 유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보호처분의 성격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관계의 해체, 사회안전망의 미흡 등으로 인한 물질·인적 자원의 부재에 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해체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기본적 의식주 해결의 곤란과 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보호받아야 하는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있어 성인은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 가.항과 같은 취지 아래 제26조 제1항에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그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소년의 보호와 구제에 있다. 그러나 위 보호처분이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소년법」 제53조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보호처분이 사실상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이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 다. 소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두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것에 있음에도, 위 현행 법률은 여전히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법률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처벌’로 인식되고 작용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이를 악용하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하여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 신설 필요 여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들은 대부분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단체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교우관계 및 학업문제, 가정해체, 빈곤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성인에 비해 보다 쉽게 성매매에 유입되기 쉽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바,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 및 접수, 주거, 교육·상담, 의료, 법률, 자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원화된 창구와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7. 6. 15.

위원장	이성호
위원	이경숙
위원	정상환
위원	최혜리





# 부 록



◎ 『아청법』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일지 (6/4 현재, 370개 단체)

- 2019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참여 제안을 시작으로,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실 면담
1. 1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설명회
1. 16.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1. 22. 공대위 발족(364개 단체) 및 국회 앞 기자회견, 김도읍 의원 면담 요청
1. 25-27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약 1,500명)
1. 25. 김도읍 의원실 공대위와 면담 거절 회신 받음
1. 28.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및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  
김삼화 의원실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 11.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2. 15. 여가부 '아청법' 개정 회의
2. 18~19 법무부 '아청법' 개정 공대위 의견서 전달에 대한 민원 회신
2. 25.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3. 5. '아청법' 개정 공대위 영상 제작
3. 8. 여가부 차관, 권익증진 국장, 장관 보좌관, 아청과 과장 면담 /  
3.8 여성대회 '아청법' 개정 공대위 부스 운영
3. 18.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3. 25. '아청법' 개정 공대위 김도읍 의원실 및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3. 26.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개최 - 안건상정 안됨
3. 27.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및 자한당 정책위의장 면담 요청 공문
3. 28. 법무부 담당자 면담 요청
3. 29.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참관 요청 공문 발송
4. 3.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개최 - 안건상정 안됨
4. 9.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4. 17-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법무부 항의 행동 돌입: 팩스 및 전화 총공  
공대위 랜딩페이지 오픈(4/17 오픈, 5/13 기준 조회수 5,101건)
4. 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아청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주최 참여 요청 공문 발송

(법사위 18명)

5. 22 '아청법' 개정 국회토론회 준비회의(아청법 공대위X남인순의원실)

6. 4. '아청법' 개정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 예정

(남인순, 김삼화, 백혜련, 표창원 의원실 공동주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구 분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일시/장소	2019. 1. 22 (화) 오전11시 / 국회 정문 앞
담 당 자	(사) 탁틴내일 강동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발목 잡는 법무부, 외면하는 법사위! 더이상 못 참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 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경과 보고  
손정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연대 발언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권주리 (10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심아라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남은주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경과보고

일 시	내 용
2013.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연대, 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센터, 엑시트, 위기청소년교육센터,민변 여성복지위원회가 &lt;아청법개정연구모임&gt;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수차례 워크숍과 국회토론회, 국정감사 출석 등 진행.</li> <li>-대상아동청소년정의규정을 삭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구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개념 전환,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아청대상 성매수범죄에 대한 대응, 국가와 기업의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법률 전면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함.</li> </ul>
2015. 7월~10월	-관악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착취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및 법개정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 국회 앞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2016.8.8. 2017.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인순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li> <li>-김삼화의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li> </ul>
2017.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아청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의장에게 전달</li> <li>-국회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인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것과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대상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성착취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li> </ul>
2018.2.2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 통과
2018.2.28.	-법사위 제 2소위(위원장 김도읍 의원)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2018.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와 아청법개정팀 제안으로 관련단체기자회견</li> <li>-국회 법사위 간사 의원실 방문</li> </ul>
2018.12.31.	-12월5일부터 31일까지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이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201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청법개정팀 대책회의(논의단체 : 전국연대, 십대, 탁틴, 다시, 아하센터, 한소리회,위청)에서 공대위구성 결의</li> <li>-김도읍의원실 방문</li> </ul>
2019.1.14	-아청법개정팀과 공대위구성 동의단체 확대회의
2019.1.22	-성매매, 성폭력방지 범여성단체,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 총 364개로 공대위구성 출범 기자회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 발목잡는 법무부, 외면하는 법사위! 더 이상은 못참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 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공기업 직원이 해외연수에 가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가장 악명이 높은 나라. 현직 경찰이 근무 중에 이탈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나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나라. 이러한 법 개정을 법무부가 막아서고 발목을 잡는 나라. 이러한 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현주소이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나, 그 어떤 피해자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범람하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방법과 수단은 더욱 더 교묘해져가고, 한국 남성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 현행 ‘아청법’은 이를 방지하기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이러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 청소년’에게는 보호관찰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법의 모순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일부개정안이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및 국민의당 김삼화의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를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UN의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도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로 긴급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하고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을 범죄에 가담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낡은 법이 무관심 속에 존치되고 있다니 이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이에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체계가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청법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는 법이라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법무부의 태도는 소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며 교육과 상담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찌하여 법무부는 처벌의 대상이라며 대안 없이 손놓고 있는 것인가. 처벌이 두려워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의 고통을 법무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의 맹점을 알고 있는 성매매알선자들과 구매자들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체인 법무부가 오히려 어떤 노력도 없이 법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와 무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두 번째 책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묻고자 한다.**

지난해 2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착취대상으로 성구매자들에게 겪는 피해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사위의 안일함이 너무도 답답하여 우리는 또 다시 국회 앞 이 자리에 섰다. 특히 작년 12월에 그루밍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개정안은 그대로 놔두는 일관성 없는 법사위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 법사위의 아동성소년 성매매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말하지만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처벌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성산업의 책임은 후안무치한 구매자와 알선업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교육과 보호처분은 범람하는 성착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법적 횡포다.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각종 보호와 법적 체계를 고민하는 사회에서, 실제 성착취라는 범죄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를 명목으로 처벌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아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우리 범시민사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2.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되는 대상청소년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처벌’ 체계가 아닌 보호체계를 수립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4. 국회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2019년 1월 22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4개

## 성매수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시선을 바꾸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탁틴내일 이현숙

지난해 2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현행법으로 인해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지위로 피의자로 조사받고 보호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논의는커녕 안건 상정조차 안하고 있다는 소식에 좌절했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 폭력 피해나 외로움,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자의 요구에, 혹은 그루밍 수법에 속아 성적인 행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연 아동의 인권의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려 접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사실을 바로 드러내고 즉시,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도 범죄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면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당한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보호처분을 가능하게 하면 아이들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고 범죄자들도 아이들 핑계를 대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면 범죄자들은 법망을 쉽게 피하면서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계속 대상을 물색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법 개정을 한시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하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성착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권주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수와 성폭력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어 피해 청소년을 범죄 가담자로 보아 선도 대상으로 보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 성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의 재판에 동석해 보면 재판부는 범죄자인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초범이거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의 감형을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른의 사연은 청취하고 죄를 묻지 않기도 하지만, 피해아동청소년들은 범죄에 가담한 아이들로 판단하고, 재범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물어 보호처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한 아청법 통합 개정안은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성매매하는 아이들이 계속 성매매를 할 것인데, 이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게 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비자발의 구분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대상의 구분이며, 보호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자발/비자발 여부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나누는 법무부 입장으로 본다면, 해마다 대상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율과 법무부가 고수하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아이들에게 처벌로 여겨져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알선자나 구매자에게 ‘너도 처벌받는다’라고 악용되어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피해는 점점 확산되고, 피해 경험연령은 점점 저연령화되는 결과만 초래하는데,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아동청소년기에 성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성매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처벌이 두려워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환경으로부터 숨지 않게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성매수에 이용되는 고리를 끊어주어야 성인기까지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고, 성매매 예방에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매수에 이용되는 주요 통로인 채팅 어플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아이들의 성을 사겠다, 교복을 입으면 더 좋다는 게시글들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이 나라에서 버젓이 성을 사겠다는, 심지어 아이들의 성을 사겠다는 글을 쓰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사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어른들이 일으키는 성범죄일 뿐입니다. 어른들이 만든 환경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이용되는 아이들의 오늘을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잘못을 저지른 어른들을 적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는 더 이상 아청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방관하지 말고, 정부로서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피해 경험을 범죄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아청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성매수의 상대가 되는 아동·청소년은 이유 불문하고 명백한 성착취 피해자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적 처분이 아닌,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 청소년입니다.

심아라(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 과 ‘대상아동·청소년’ 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대상아동·청소년’ 은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이며, 이들이 경험하는 피해는 폭행, 협박, 회유, 강간, 갈취, 살인 등의 범죄위협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대상아동·청소년’ 으로 정의내려 ‘보호처분’ 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너도 처벌을 받는다’ 는 협박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상황을 경험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청소년들을 왜!! 아청법에서는 ‘피해자’ 로 정의내려지지 못합니까? 눈을 뜨고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다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현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착취 피해자입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악용하는 그루밍수법이용자, 성매수자, 알선자, 랜덤채팅 앱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행위 처벌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입니까? 인권과 생명 앞에서의 성착취 범죄는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법적체계를 갖추어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실제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한 위계상의 위치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테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이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문구를 삭제하고, 산발적/표면적 지원체계가 아닌 다각적/체계적/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갖출 것으로 요구합니다.

## 전국위기청소년 교육센터 대표 남은주 발언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든든한 연대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10개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법적인 근거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상청소년 40시간 수강명령을 진행하기 위한 매년 재계약하는 정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만나 라포를 형성하고 성장캠프를 통해 법률, 의료 지원, 생활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구여성회는 이 사업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성매매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피해를 입는 나이는 어려워지고 학교에 다니는 성매매청소년 피해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성매매 제안인지 분별할 수 없는 성매매 제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상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계몽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10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10년 이상 실무자 2명의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맡겨놓은 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활동해온 거점 센터는 1명의 실무자가 성인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의 역할을 모두 하는 사업내용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처벌하는 대상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의 피해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법에 명시하는 법을 새로운 아청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방기해서는 안됩니다.

# 보 도 자 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말로는 보호대상, 사실은 처벌대상!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말라!”

일시/장소: 2019. 1. 28 (월) 오전 11시 / 정부과천청사 정문(법무부)

구 분	기자회견 취재,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 아동 담당
발 신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 사단법인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담 당 자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 <a href="http://www.10up.or.kr">www.10up.or.kr</a> / 02) 6348-1318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대표 조진경, 사무국장 권주리

###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연대 발언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심아라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남은주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대표단
- 법무부규탄 공대위 기자회견문,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서,  
아청법 개정촉구 서명, 관련 자료 등 전달

## [기자회견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문

### **말로는 보호대상, 사실은 처벌대상!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말라!!**

지난 1월 22일(화), 364개의 범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아청법’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범죄자로 모는 현실을 알게 된 더 많은 시민들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 공대위는 시민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 그 첫 번째로 그간 ‘아청법’ 개정 제동을 걸어 온 법무부에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나, 그 어떤 피해자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범람하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방법과 수단은 더욱 더 교묘해져가고, 한국 남성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 현행 ‘아청법’은 이를 방지하기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성매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아청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다. 헌법재판소 또한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윤락여성’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기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1헌가1 결정) 결국 현행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은 ‘아청법’의 본래

입법취지에도 전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2018년 1월에는 아청법 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http://segye.com/newsView/20180126001438>)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법무부 장관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청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은 인격이 미성숙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비범죄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왜 범죄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묻고 있는가? 심지어 이는 사실조차 아니다. ‘아청법’ 제38조 ①항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화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아청법’에서도 본래 비범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심지어 아동청소년에게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형법체계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에 노출된 책임을 전가하는가? 또한 어떤 나라가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지우는가?

또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가 내놓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변명일 뿐이다. 절도 가해자나 성매매 알선 강요한 또래 포주들과 똑같이 보호처분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처벌이 아닐 수 있는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길 주저하고, 결과적으로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인 성매매를 강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법무부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체인 법무부가 오히려 법 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처벌하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책임은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교육과 보호처분은 범람하는 성착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법적 횡포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자이자 범죄자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도 부재하고 보호목적도 상실한 법무부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법 집행태도를 강

력히 규탄한다.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법무부 장관이 개정 의지 표명까지 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아청법’ 개정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다. 법무부가 보호해야 할 것은 ‘아청법’이 아니라 이 땅의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 범여성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이름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벌되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을 사는 구매자와 알선자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상업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아청법’ 개정예 앞장서라!
2. 법무부는 지난 1월 16일자 공대위가 요구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즉각 추진하라!
3.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3.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4. 국회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2019년 1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 사단법인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 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4개**

## [참여단체 연대발언문]

법무부는 ‘대상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성착취 범죄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기는 커녕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 아청법의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법 개정에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탁틴내일 상임대표 이현숙

지난해 2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현행법으로 인해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지위로 피의자로 조사받고 보호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지 11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법무부가 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은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의 입장이 정리 되지 않으면 법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청법 개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법무부는 이렇다할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 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물 건너 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법을 통과하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의 피해는 이어질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 폭력 피해나 외로움,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자의 요구에, 혹은 그루밍 수법에 속아 성적인 행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연 아동의 인권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려 접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사실이 바로 드러나고 즉시,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받도록 법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도 범죄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면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당한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 보호처분을 가능하게 하면 처벌이 두려운 아이들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범죄자들도 아이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면 범죄자들은 법망을 쉽게 피하면서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계속 범죄 대상을 물색할 것이고 청소년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조속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고 법 개정에는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권주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수와 성폭력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어 피해 청소년을 범죄 가담자로 보아 선도 대상으로 보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성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의 재판에 동석해 보면 재판부는 범죄자인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거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의 감형을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른의 사연은 청취하고 죄를 묻지 않기도 하지만, 피해아동청소년들은 범죄에 가담한 아이들로 판단하고, 재범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물어 보호처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한 아청법 통합 개정안은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성매매하는 아이들이 계속 성매매를 할 것인데, 이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게 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비자발의 구분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대상의 구분이며, 보호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묻습니다. 자발/비자발 여부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나누는 법무부 입장으로 본다면, 해마다 대상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율과 법무부가 고수하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아이들에게 처벌로 여겨져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알선자나 구매자에게 ‘너도 처벌받는다’ 라고 악용되어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성인 피해자도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사실상 처벌조항이 있는 아청법에서 처벌을 감수하고 도움을 요청할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는 점점 확산되고, 피해 경험연령은 점점 저연령화 되는 결과만 초래하는데,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아동청소년기에 성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성매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처벌이 두려워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환경으로부터 숨지 않게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성매수에 이용되는 고리를 끊어주어야 성인기까지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고, 성매매 예방에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매수에 이용되는 주요 통로인 채팅 어플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아이들의 성을 사겠다, 교복을 입으면 더 좋다는 게시글들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이 나라에서 버젓이 성을 사겠다는, 심지어 아이들의 성을 사겠다는 글을 쓰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사회,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

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어른들이 일으키는 성범죄일 뿐입니다. 어른들이 만든 환경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이용되는 아이들의 오늘을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잘못을 저지른 어른들을 적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아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청소년을 방관하지 말합니다. 더 이상 아동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법무부는 정부로서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아이들의 피해 경험을 범죄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매수의 상대가 되는 아동·청소년은 이유 불문하고 명백한 성착취 피해자입니다.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자를 위해 독소 조항인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반드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심아라(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쾌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폭력과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성매매를 직접 겪었기에 말하고 싶습니다. 성매매는 스스로를 가축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폭력에 길들여지고, 성구매자와 알선자의 유혹과 그들의 말에 길들여져 성매매라는 우리에게 간혀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도 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재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반성의 강요로 처벌하듯 행해지는 보호. 성구매자와 알선자들로부터 듣는 “성매매에서 빠져나와도 사람들은 너를 욕하고, 더러운 몸보듯 할거야, 너는 처벌받아” 등의 협박.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빠지게 되는 이유, 성매매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매매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폭력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하고, 감정에 무뎌지게 만들어 사람으로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매매라는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성매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고, 피해를 입히는지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알려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 행위, 성폭력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으로 법적체계를 갖추어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실제로 보호해야 합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악용하는 그루밍수범이용자, 성매수자, 알선자, 랜덤채팅 앱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행위 처벌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문구를 삭제하고, 산발적/표면적 지원체계가 아닌 다각적/체계적/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갖출 것으로 요구합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은 말합니다. 성매매는 알선자와 구매자들을 통해 자신을 유포하여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폭력이며, 착취, 갈취, 폭행, 협박, 낙인, 강간, 살인 등의 피해에 놓여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피해 사실을 세상이 제대로 알려주기를 희망합니다. 성매매라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착취 피해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성착취 피해청소년의 요청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 국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아청법을 개정하고 착취 아동·청소년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위기청소년 교육센터 대표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든든한 연대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월22일 아청법개정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보호’ 하는 미명아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의거 실질적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이 처벌 조항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도 못했고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허울뿐인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지역사회 청소년 종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해바라기 아동센터, 위기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관의 종사들의 일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두려워 피하거나 오히려 2차 가해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지원은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사회는 이 발랑 까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인식의 전환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에 ‘대상’ 청소년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기관의 체계와 지원 시스템은 종합적이거나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관 중에 참으로 허술한 구조로 국가의 책임을 면피해 온 것이 바로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입니다. 중앙을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교육센터는 13년 동안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상청소년 40시간 수강명령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위에 열거한 기관에서 연계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의료, 법률, 심리, 부모상담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재계약하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정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부의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체계 의지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위청은 상담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실무자 2명이 피해아동청소년을 만나 라포를 형성하고 성장캠프를 통해 법률, 의료 지원, 생활지원을 해왔습니다. 2017년 한해 상담건수는 11,164건, 사례관리인원은 1,471명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1명이 모든 것을 다하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를 만드는 이름뿐인 구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국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아청법을 개정하여 ‘피해’에 대한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리이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약에 근거한 당연한 일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대상청소년을 ‘교육’ 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바꾸면 대책이 무엇이냐고 공대위에 묻습니다. 이 물음에 답해야 하는 것은 공대위가 아니라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아청법개정 이후의 지원체계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장단기

적 성착취 아동·청소년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눈감아온 정부가 지금 당장해야 할 일입니다. 스톨미투에서 볼 수 있었듯이 더 이상 여성아동청소년들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가장 강력한 시민적 주체임을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는 인식해야 합니다.

출처: 세계일보 (<http://segye.com/newsView/20180126001438>)

## 법무부 "청소년, 성매매 대상→피해자 개정 검토"

입력 : 2018-01-26 10:52:20      수정 : 2018-01-26 10:52:20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박상기 법무장관(왼쪽) 등과 함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경우 해당 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자’로 보고 있는 현행 법규를 고쳐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청소년 성매매, 아동학대 등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채팅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하진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현재 범죄피해자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젠더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도 “성평등과 관련해 양성평등위원회 중심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 부처와 협력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의 성평등과 지위 향상, 권익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여가부가 주무부처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여가부에 주문했다. 아동학대 예산에 대해 이 총리는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좋은 것인지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법무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법무부와 여가부 등 7개 부처가 동시에 참여해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뤄졌다. 특히 민간인 참석자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날카로운 지적과 제안을 했다. 이 총리와 각 부처 기관장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뒤 서로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간·국회·정부가 협력해 보고된 내용들을 강력히 추진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mailto:af103@segye.com)

<공대위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공문>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법무부 장관

(경유) 담당자

제 목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의 건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사회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관련하여 아청법 개정 공대위 취지를 첨부합니다.

3.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현행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의 1년동안이나 계류되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법무부의 ‘사실상’ 반대의견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청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대해 법무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붙임 : 아청법 개정 공대위 취지문 1부 <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발 신 일 2019. 1. 16. 담당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연락처(010-

대표전화: (02)6348-1318 이메일: 10up@hanmail.net 홈페이지주소: <http://www.10up.or.kr>

# 보 도 자 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대위'와  
김삼화 의원이 함께 하는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청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안건 상정하고,  
'아청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일시/장소: 2019. 1. 28 (월) 오후 16시 / 국회 정론관

구 분	기자회견 취재,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 아동 담당
발 신	<b>'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b> 대표단: 사단법인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담 당 자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 <a href="http://www.10up.or.kr">www.10up.or.kr</a> / 02) 6348-131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대표 조진경, 사무국장 권주리

## [기자회견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김삼화 의원이 함께 하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청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안건상정하고 '아청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1월 22일(화), 364개의 범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아청법’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범죄자로 모는 현실을 알게 된 더 많은 시민들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공대위’는 시민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 그간 ‘아청법’ 개정 제동을 걸어 온 법무부에 책임을 묻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지금 여기 국회 정론관에 김삼화 의원과 다시 섰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 SNS,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하는 수법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양상도 협박, 감금, 강요, 폭력, 강간,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살해사건들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 남성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아청법’은 이를 방지하기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성매수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아청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다. 또한 ‘아청법’의 본래 입법 취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윤락여성’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기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1헌가1 결정) 결국 현행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은 ‘아청법’의 본래 입법취지에도 전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2018년 1월에는 ‘아청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http://segye.com/newsView/20180126001438>)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법무부 장관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청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은 인격이 미성숙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비범죄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왜 범죄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묻고 있는가? 심지어 이는 사실조차 아니다. ‘아청법’ 제38조 ①항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율하고 있어 ‘아청법’에서도 본래적으로 비범죄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심지어 아동청소년에게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형법체계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에 노출된 책임을 전가하는가? 또한 어떤 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지우는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책임은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에게 있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자이자 범죄자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일이다.

그러면 국회는 또한 어떠한가? 2015. 8. 이미 한차례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된 후, 2016. 8. 8., 2017. 2. 13. 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으로 이들 개정안의 내용대로 ‘아청법’이 개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이후 2018. 2. 2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 2.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 2소위(위원장 김도읍 의원)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법사위 제 2소위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최근 김도읍 의원은 ‘공대위’와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를 거절하였다. 그것은 간담회를 하더라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변인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대화도 해보지 않고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회의 국민에 대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공대위’는 국회의 이런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안전 상정 자체가 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대화까지 거부한 이 상황이 앞으로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어떻게 작용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더욱 더 심화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 끊임없이 벌어질 성착취 피해와 피해 상황이 신고되지 못해,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받더라도 숨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활개치고 다닐 성매수자와 알선 범죄자들에 대해 손놓고 쳐다보고 있을 수 밖에 없을 현실이 분노를 넘어 공포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우리 ‘공대위’는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안전상정과 이를 위해 ‘공대위’와의 간담회를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 범여성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청법 개정 공대위’의 이름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아청법 개정 공대위’가 요구한 간담회에 즉각 응하라!!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전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3. 국회는 ‘아청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4.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벌되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을 사는 구매자와 알선자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상업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아청법’ 개정 에 앞장서라!

5.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6. 국회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2019년 1월 28일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 사단법인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 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70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새움터, (사) 인권희망‘강강술래’, (사)여성인권 티움,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 상담소)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햇살 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플러서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사) 나누리회부설 헤아림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씨튼해바라기의집, 평화의샘, 희망터, 나루, 안뜨

레봄, 구세군정다운집, 우리청소년여침자리, 여신, 수지의집, 소망의집, 누리봄, 씨밀레, 동글레청소년지원시설, 구세군샬리홈, 신나는디딤터, 살림침터, 부산여성의집, 해뜨는집, 헤아림, 로템의집, 경남범숙의집, 해바라기침자리)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락 상담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사)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강원여성인권지원센터 공동체 춘천길잡이의 집,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한부모지원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상담소, (사)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침터, (사)구세군샬리홈, (사)부산여성의집, (사)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부설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새길공동체 누리터, (사)새길공동체 해봄터, (재)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사)들꽃청소년세상**(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자립팜 "이상한나라앨리스", 한신침터, 새밭토끼풀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인애해바라기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엘이디코스모스가정, 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관악교육복지센터, 들꽃청소년연구소, 전북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뽀얏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

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템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

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종량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1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2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춘천길잡이 의집, 장애인권법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사)두루,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대구여성회, 세이브더칠드런,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탁틴내일, 경계너머교육센터, 사)평화의샘, 푸른아우성, 군포탁틴내일, 함께걷는아이들



# 메 모









